

2023¹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지난 5월 31일까지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총 366개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2019년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가 의무화되었고, 2022년부터는 자산총액 1조원 이상 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2024년에는 5천억원 이상, 2026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366개사 중 비금융사가 327개사, 금융사가 39개사이다. 그 외에 10개사가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년에는 의무 공시 대상 345개사(비금융 304개사, 금융 41개사)와 그 외 12개사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본고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주목해야 할 주제와 시사점을 검토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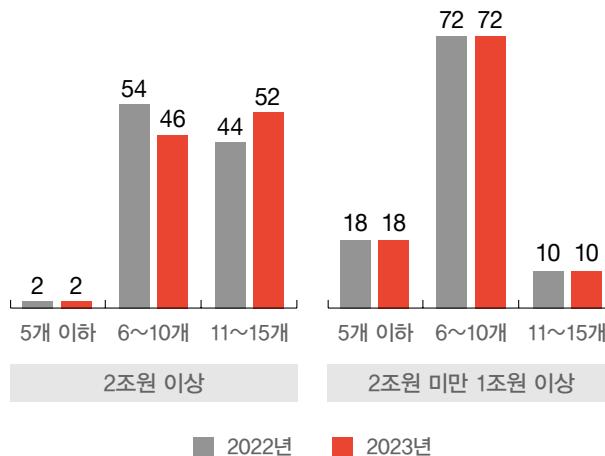
-
-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로서, 본고는 분석을 위해 2022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확인하였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에 첨부되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작성 기준시점을 보고서 제출일 현재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제목을 '2023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으로 정하였다.
 - 2 분석 대상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상장회사 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금융기업의 경우 '금융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갈음한다.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이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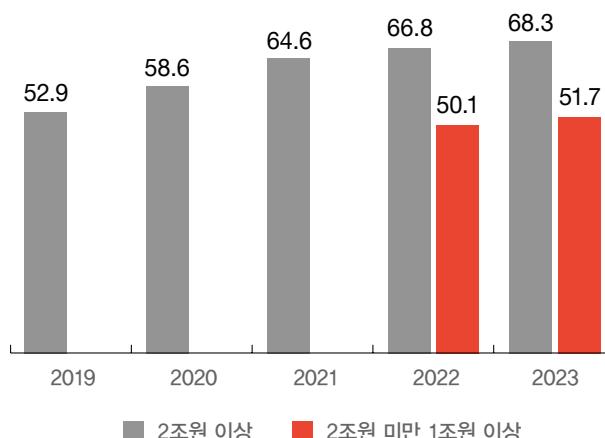
Key findings

① 준수 현황별 기업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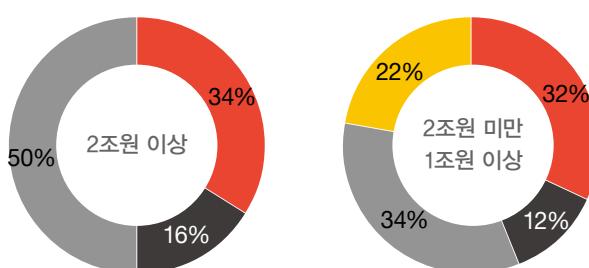
- 2조원 이상 기업 중 11개 이상 핵심지표를 준수한 기업 비율은 52%(전기:44%, 전전기:35%)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반면,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은 전기와 거의 유사하여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

② 5년간 평균 준수율 추이 (단위: %)



- 2조원 이상 기업의 평균 준수율은 2023년(2022년)에 전년 대비 1.5% 포인트 (2.2%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공시 의무화 2년차인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평균 준수율은 1.6% 포인트 소폭 상승하였음

③ 작년 대비 준수율 변화



- 작년과 비교하여 준수율이 변동하지 않은 회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준수율이 높아진 회사가 많았음
- 작년 대비 준수율이 하락한 기업은 2조원 이상 기업의 16%,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12%를 차지함

■ 준수율이 상승한 회사 비율
■ 준수율이 동일한 회사 비율
■ 신규 공시 회사

④ 준수율이 높은 지표 Top 4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핵심지표 항목
100%	100%	⑩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9%	96%	⑯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7%	85%	⑯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6%	80%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장기 재직 사외이사와 내부감사기구 내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존재 여부는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임. 다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경우 내부감사기구로 감사가 설치되었다면 상법상 전문가 요건이 없음

⑤ 준수율이 낮은 지표 To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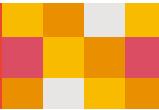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핵심지표 항목
5%	3%	⑧ 집중투표제 채택
24%	11%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39%	19%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50%	45%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핵심지표 준수율의 개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준수율이 매우 낮은 몇몇 지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원인 분석과 해당 항목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안적인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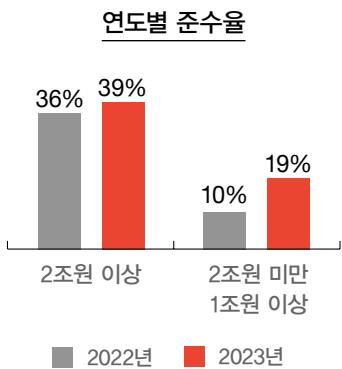
⑥ 기업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큰 항목

준수율 차이 (단위:% 포인트)		핵심지표 항목
2023년	2022년	
38	42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32	26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31	21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26	20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24	22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평균적인 핵심지표 준수율은 2조원 이상 기업과 약 17% 포인트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 전기와 비교할 때 규모별 차이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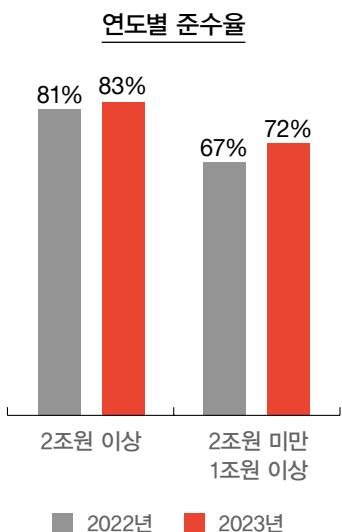


다른 핵심지표에 비해 동 지표의 준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정보를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³. 구체적인 미준수 사유로는 계열사 재무제표 확정 후 연결재무제표 작성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기업 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동 지표의 준수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들이 지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주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19%의 준수율을 보여 전년과 동일하

게 2주원 이상 기업과 준수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인력과 자원 면에서 제약 요인이 2주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에서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편, 우리나라 상법⁴은 기업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하므로, 법률 준수를 위한 기한인 2주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0년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총 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게 되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⁵.

2.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년대비 준수율이 상승하였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다른 지표의 준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2020년 12월 개정된 상법은 전자투표 실시로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기업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다. 2017년 셰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로 인해 정족수 미달의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상장회사 중 2023년 정기 주총에 전자투표 도입률은 61.2%⁶로, 규모가 클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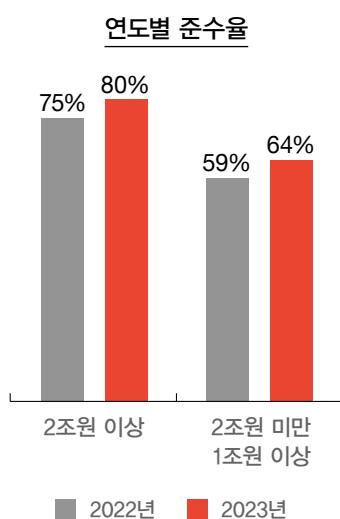
3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58호 서식>

4 상법 제363조제1항, 제542조의4제1항

5 단,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기업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6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 2023.4.26

3. 주주총회 집중일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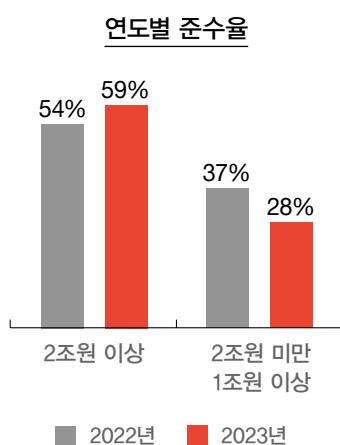


동 지표의 준수율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작년 대비 5% 포인트의 준수율 개선을 보였다. 여기서 주주총회 집중일이라 함은 매년 초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의미한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은 주총 집중예상일을 연도별로 3개씩 선정하여 공지하고, 이를 제외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협회에 통보한 기업에 인센티브(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를 부여한다. 반면, 주총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전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예상 집중일이 속한 3월 마지막 주차 개최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2023년 72.65%, 2022년 62.94%, 2021년 44.24%) 개선되지 않고 있다⁷. 주주총회는 주주와의 가장 직접적인 소통 창구이

자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4.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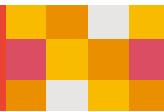


올해 주주총회에서 주목을 끌었던 주제 중 하나는 주주환원이었다. 배당과 주식 소각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주주환원은 주주행동주의의 주요 관심사로서 다수의 상장사에서 주주들의 확대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배당에 대한 급격한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동 지표는 낮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어, 배당정책과 이에 대한 소통에 보다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기서 배당 정책이란 단순히 당기의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배당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행 기준과 방향을 의미하며, 배당실시 계획은 당기의 배당 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또한, 통지는 공시, 주주 개별통지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IR, 홈페이지 게시 등 주주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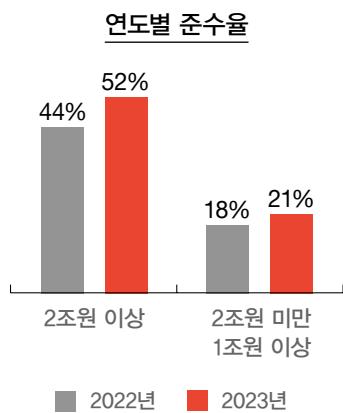
기업의 배당정책은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공유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유지할 이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이다. 배당정책 공개는 주주들이 기업의 이익 분배 방식을 이해하고 기업의 재무 상태와 전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또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고 미래 수익에 대한 신호 역할을 하여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자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⁸.

7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3년 정기주주총회 운영 현황 및 주요 특징, 2023.4.26

8 한국거래소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2년 배당총액은 26.6조원을 기록하여 지난 2020년 최대 규모(33.2조원)를 보인 이후 작년(28.6조원)에 이어 올해도 현금배당 규모의 감소를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7.1% 감소한 금액이며,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은 557사로 전체 12월 결산 상장법인(784사) 중 약 71%를 차지하며, 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은 전체 현금배당 법인의 80.1%에 해당한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현금배당 공시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 2023.4.20)



5.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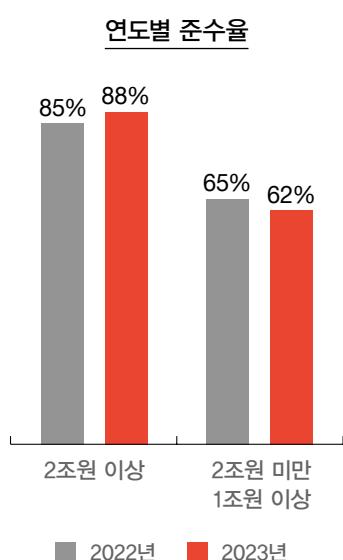


동 지표의 준수율에 있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 공시가 두 번째 해인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2조원 이상 기업과 약 31% 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2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52%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준수율을 보였으며,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은 21%로 준수율이 상당히 낮았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려면, 단순히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집단)의 구성 또는 선정을 위한 기준, 교육, 평가, 정기적 개선 및 보완 등이 실제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여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에만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핵심지표 미준수 사유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비상시 승계 절차에 관한 시스템은 구축 중이나, 명문화된 정책이 없다는 설명이 많았다. 기업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현재 대표이사와의 관계 등에 있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생소하여 각 기업에 적합한 승계정책을 단기간에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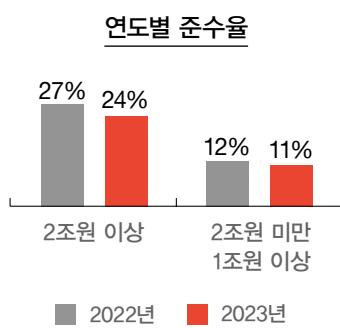
6. 내부통제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 여부 및 운영현황,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 여부 및 운영현황, (iii)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동 지표 역시 기업 규모별 준수율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미준수로 기재한 기업들의 대다수가 내부회계관리 정책의 경우 명문화되어 있으나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및 공시정보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업들은 추후 이사회 내 별도 위원회 구성 및 정책 수립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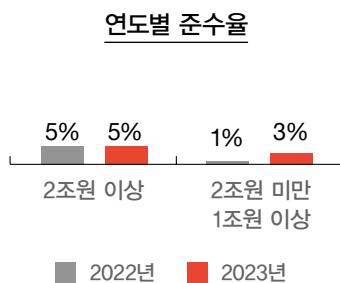
7.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있다.



전년 대비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것이 모든 기업에 최선이 아닐 수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가 권장되고 있다. 미준수한 사례 중에는 기업의 특성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 등에 있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가 많았으며, 향후 분리를 위해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만약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선임 사외이사를 두어 의장 역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미준수한 사례 중에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활발히 운영하고 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충분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도 많았다.

8.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인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기업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⁹.

집중투표의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¹⁰. 그리고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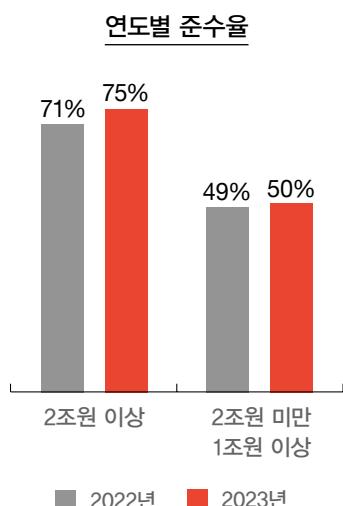
집중투표제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며,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해지펀드 등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제도이다. 많은 경우, 투기자본 세력 등이 이사회 및 기업 경영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미준수 사유를 제시하였다. 집중투표제 대신 소수주주 의견 청취를 비롯한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기재한 회사도 많았다.

9 상법 제382조의2제1항

10 상법 제382조의2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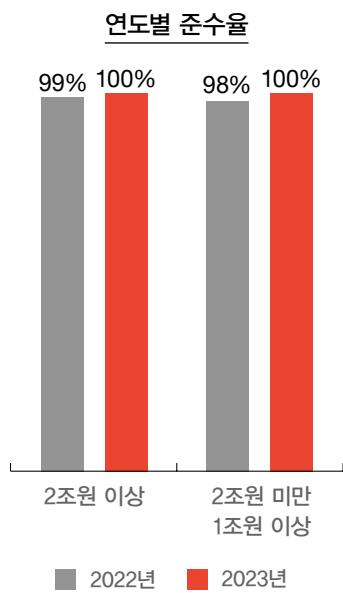
11 상법 제382조의2제4항

9.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동 지표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거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동 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임원의 현재 존재 여부가 아닌 이러한 임원의 선임을 금지하는 명시적 기준 또는 절차의 수립 여부 및 실제 부존재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 범위에는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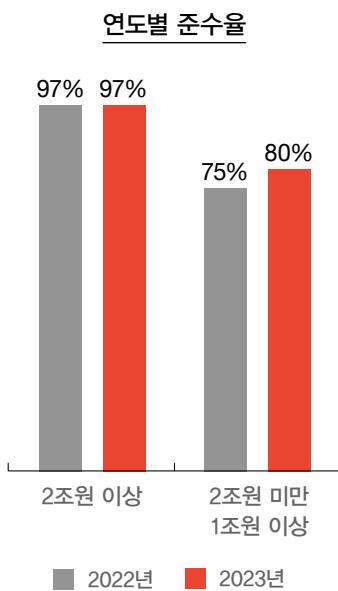
10.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가 없다.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 기업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종전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기업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기업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¹². 이에 따라 2023년도에는 분석 대상 회사 모두 동 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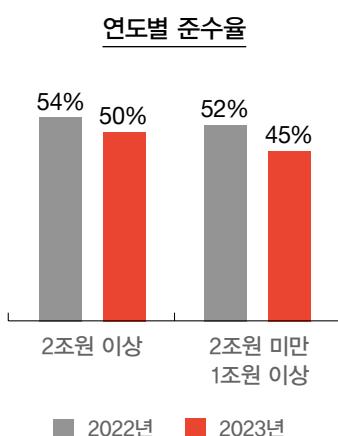
11.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하였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4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023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97%라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시장과 제도가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 전환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2조원 이상 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미준수 기업의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현황 및 안건 내용의 설명과 질의응답만 진행했거나 관련 분야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내부감사기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기업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제도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최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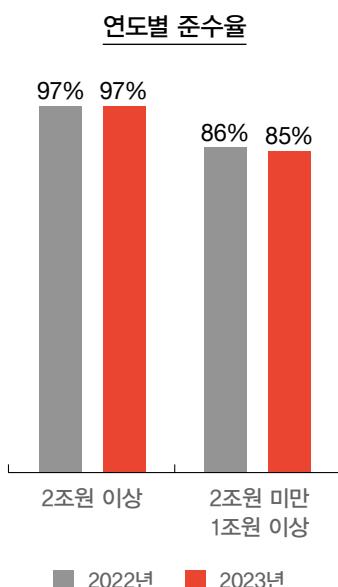
1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를 설치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표의 준수율이 가시적인 개선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독립적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데,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 평가 및 이동에 있어 감사위원회(위원장)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여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란, 명칭을 불문하고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며,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는 부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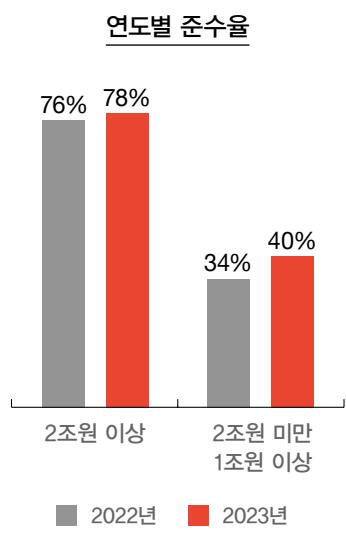
미준수 사유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대부분 전담 부서는 있으나 감사위원회 산하에 있지 않고 경영지원실 소속 등 조직 구조상 대표이사 산하에 있거나, 인사 관련 의사결정에 감사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 반면,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전담 부서가 없고 다른 업무 부서(법무, 회계, 전략기획 등)에 소속된 직원 중 지정된 직원이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한다.



동 지표는 상법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¹³ 그러나 내부감사기구로 감사를 설치한 경우 상법은 별도의 전문가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사가 설치된 기업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미준수로 기재하였으며, 향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영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한 회사도 있었다.

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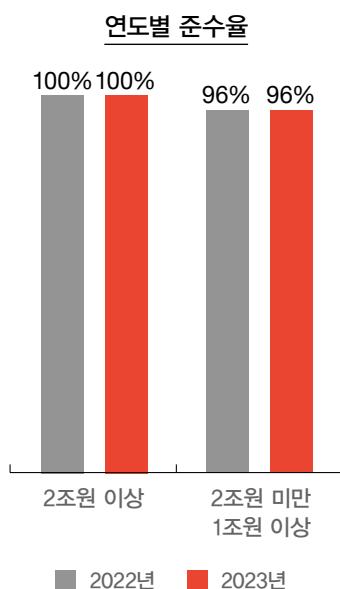
동 지표의 준수율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표는 자산 규모별 준수율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지표로, 차이가 약 38% 포인트(2022년은 42% 포인트)에 달한다.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갖는 회의는 기업의 문화, 재무보고 이슈, 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실무적으로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직후에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기업은 사전에 감사위원회 회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과도 일정을 논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동 회의는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되며, 감사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되는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예를 들어, 재무보고 관련 부서의 임직원)의 참석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주원 미만 1주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 대면 또는 화상회의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은 원인으로 판단된다.

13 상법 제542조의11제2항

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모든 기업이 준수하였으며,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기업의 준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기업들의 내부감사기구가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 등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내부규범에 정보 접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업은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의 핵심지표 미준수 사유는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절차 및 정책이 없다는 설명이 대부분이었다.

구분	핵심지표	2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조원 이상	전체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38.9%	19.3%	31.8%
	② 전자투표 실시	82.7%	72.3%	78.9%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79.8%	63.9%	74.0%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58.7%	27.7%	47.4%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52.4%	21.0%	41.0%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88.0%	62.2%	78.6%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4.0%	10.9%	19.3%
	⑧ 집중투표제 채택	4.8%	2.5%	4.0%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74.5%	50.4%	65.7%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100.0%	100.0%	100.0%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6.2%	79.8%	90.2%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0.0%	44.5%	48.0%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7.1%	84.9%	92.7%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77.9%	40.3%	64.2%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9.5%	95.8%	98.2%

별첨 2. 2023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자율공시]

구분	핵심지표	준수율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10%
	② 전자투표 실시	90%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90%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20%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50%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70%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30%
	⑧ 집중투표제 채택	0%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90%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100%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80%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90%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80%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30%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0%